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93 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 박덕흠 · 김용태 · 강승규

고동진 • 김예지 • 정희용

조지연 · 강민국 · 김장겸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 피해액은 1조 원이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,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실화가 산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.

최근 5년 간 발생한 2,600건의 산불 가운데서도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(31.6%), 논·밭두렁 소각 195건(7.5%), 쓰레기 소각 2 52건(9.7%), 담뱃불 실화 254건(9.8%), 성묘객 실화 68건(2.6%)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.

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,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많 아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,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

년 이하로 하며,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,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(形)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.

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사림,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고,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(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및 제79조, 제80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1항 중 "5년 이상"을 "7년 이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, "3천만 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70만원"을 "1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0만원"을 "50만원"으로 한다.

제9장에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0조(가중죄)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(刑)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	
제76조(벌칙) ① 타인 소유의 산	제76조(벌칙) ①		
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<u>5년 이</u>	<u>7</u> 년 이		
<u>상</u>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	<u> 상</u>		
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	②		
른 사람은 <u>1년</u> 이상 10년 이하	<u>2년</u>		
의 징역에 처한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	4		
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			
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<u>3년</u> 이하	<u>5년</u>		
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	<u>5천만원</u>		
벌금에 처한다.	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
제79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7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		
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	<u>300만원</u> -		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	③		
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			
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<u>70</u>	<u>100</u>		
<u>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	<u>만원</u>		
다.			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<u>30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, 시·도지 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 산림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신 설>

(4)
<u>50만원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5
제80조(가중죄) 제76조제1항부터
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
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
당 항에서 정한 형(刑)의 2분의
1까지 가중할 수 있다.